

비혼·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저출산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고,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미흡,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부재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유입은 제한적이지만,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고용 등 인구유발시설로 활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 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활용될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범정부 차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인구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심도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으니, 이러한 분석결과를 관련 업무 개선방안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6.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실태

가. 감사실시 개요

정부는 2003년 2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관리를 효율화하고 각종 도시문제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을 신도시에 접목하여 기반시설 구축 위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신산업을 창출하고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KDI 여론분석팀에서 수행한 ‘스마트시티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27.3%에 그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노력에도 그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나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그간 추진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중복, 낮은 서비스 수준 등의 문제가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를 점검,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에 적용할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2020년 12월 7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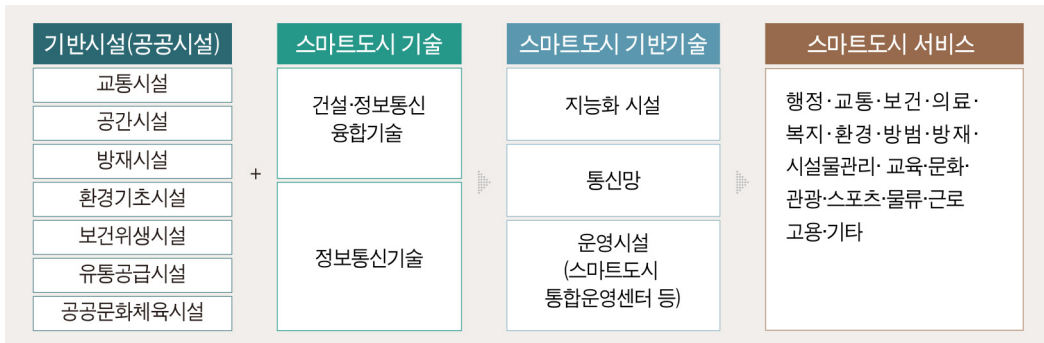
나.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스마트도시 일반 현황

① 스마트도시의 개념 및 구조

스마트도시는 각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이나 도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2조에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정의하면서,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접목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의 구조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스마트도시법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등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현행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등을 승인하며,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개별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스마트도시 추진 실태

① 스마트도시 관련 제도 정비 현황

정부는 2008년 3월 「유비쿼터스²⁴⁾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면서 면적 165만㎡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개발 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기존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는 스마트도시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2017년 8월 국토교통부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변경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하였다.

24)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여기에 ‘도시’를 조합하여 한국의 초기 단계 스마트도시로 대두된 개념

② 스마트도시 발전단계별 정책 추진 현황

한편,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 역시 제도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 진화해왔다.

한국의 스마트도시 발전단계

구분	1단계 (2009년~2013년)	2단계 (2014년~2018년)	3단계 (2019년~2023년)
제 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스마트도시법」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주 체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중심	중앙정부(개별)+ 지방자치단체(일부)	중앙정부(협업)+ 지방자치단체(확대)
대 상	신도시(165만㎡ 이상)	신도시+기존도시(일부)	신도시+기존도시(확대)
사 업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 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 추진	국가 시범도시 조성,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반영하여 2019년 6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인프라 구축 위주의 유비쿼터스도시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도시구축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구축,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정부의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노력에 힘입어 현재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로서, 2020년 12월 기준 총 1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74개 스마트도시건설사업(화성시 등 67개 지방자치단체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74개 지구에는 총 9,52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었으며, 지구당 평균 129억 원이 투입되었다.

다. 감사결과

(1) 계획수립 분야

①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등 부적정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및 협의회 미구성 스마트도시법 제8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 전 스마트도시기본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여건 변화 등으로 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본시설의 관리·운영, 재정보호 방안,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등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은 스마트도시기본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적정 규모 결정, 중복 투자 및 발생 가능한 갈등요소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한 58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지구(36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중 13개 사업지구(22.4%, 12개 지방자치단체 소관)가 계획수립 의무 미숙지 등의 사유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으며, 3개 지방자치단체는 5개 사업지구(8.6%)에 대하여 달라진 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한 58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지구

(36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중 22개 사업지구(37.9%, 19개 지방자치단체 소관)가 협의회 구성 전담부서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미수립 및 주요시설 미반영 스마트도시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목적·기간·방법,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관리·운영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준공 후 무상귀속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주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실시계획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8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지구 중 34개 사업지구(58.6%)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으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건설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등에서 시설운영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인수를 장기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을 누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주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2) 기반조성 분야

① 스마트도시서비스 선정 및 구축 부적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구축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있는데, 2011년 사업 초기 6대 기본서비스(실시간 교통제어, 교통제어 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주정차위반차량단속, 대중교통정보제공, 공공지역안전감시)를 선정·적용하기 시작하여 2019년 6월부터는 총 58종의 스마트도시서비스 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6대 기본서비스 등은 여러 사업지구에 지속해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기적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최신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별 기술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구축된 서비스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서비스를 기술 보완이나 문제점 개선 없이 반복적으로 구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축·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관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으로 일부 서비스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활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간 교통제어 서비스 반복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4개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지구 중 화성동탄1 등 29개 지구에 실시간 교통제어 서비스를 TRC(Traffic Response Control, 실시간 신호제어)방식으로 구축(구축비용 173억여 원)하였는데, 이 방식은 차량검지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여 구간속도, 점유율, 대기길이, 정체도 등을 산출해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TRC 방식은 기술적 한계 등으로 구현·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기술 동향을 파악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구축·이관함에 따라 29개 지구에서 모두 실시간 교통제어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등 실시간 교통제어 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루프검지기 3,353대(구축비용 68억여 원), 영상검지기 139대(구축비용 21억여 원)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시설물 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주 별내지구에 파손누수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014년 11월 21일 남양주시에 이관하였는데, 설치

과정에서 위 파손누수감지시스템이 별내지구 주요 배수관종인 400mm 이하의 관종에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시스템을 9,800만 원을 들여 설치하였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손누수감지시스템이 기존 시스템보다 누수 감시 범위가 좁고 유지관리비가 이중으로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남양주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2020년 8월 철거를 요청하자, 2021년 1월 150만 원을 들여 이를 철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현장에서 운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를 계속 구축하거나 구축된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현재까지 구축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기술 수준, 운영 실태, 문제점 등을 조사·평가하여 신규 사업지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기술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2009~2013년, 개발비 106억여 원)을 개발하고,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 매칭)으로 추진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8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총 63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보조사업 공모 조건으로 통합플랫폼과 함께 5대 연계서비스(112 긴급영상·112 긴급출동·119 긴급출동·재난상황 지원·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통합플랫폼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업체가 구축하되 통합플랫폼과 5대 연계서비스의 연계작업은 스마트도시협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5대 연계서비스 활용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기간에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한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연계서비스 활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112 긴급영상, 112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 지원 서비스는 활용이 잘되고 있는 반면, 재난상황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추가적인 단말기 요금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활용 건수가 0건인 지방자치단체 수가 각각 33개와 29개나 되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도시협회를 통한 연계 추진 관련 스마트도시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스마트도시협회는 스마트도시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분석,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지원’ 업무를 스마트도시협회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감사원 감사기간에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한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협회의 역할 관련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24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데이터 연계 표준이 공개되면 스마트도시협회를 통하지 않고도 통합플랫폼과 5대 연계서비스의 연계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 연계작업 수행자로 스마트도시협회를 지정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므로 데이터 연계 표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스마트도시협회가 5대 연계서비스 연계작업을 직접 수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도시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플랫폼과 외부기관의 데이터 연계규격 표준을 공개하여 민간 플랫폼 업체가 연계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5대 연계 서비스는 스마트도시협회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스마트도시협회가 외부기관과의 연계작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었고, 스마트도시협회는 정부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규격을 스마트도시협회만 보유한 채 민간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2020년 12월까지 시흥시 등 81개 지방자치단체는 41억 6,000만 원을 라이선스비 명목으로 스마트도시협회에 지급하였다.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준공업무 관련 2016년 원주시와 완주군은 경찰·소방 망과 지방자치단체 망을 연계하여 112 긴급출동 지원 서비스, U-긴급영상 지원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각각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계약(금액: 원주시 7억9,100만 원, 완주군 7억 800만 원)을 체결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원주시와 완주군은 계약대상자들이 계약 내용과 달리 112 긴급출동 지원 서비스, U-긴급영상 지원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하였는데도 시정 요구하거나 계약금액 조정 등을 하지 않은 채 최종 준공 처리하여 원주시는 2020년 7월경까지, 완주군은 2021년 3월까지 통합플랫폼을 당초 구축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5대 연계서비스 중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외부기관의 데이터 연계규격을 표준화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원주시와 완주군에 계약업체와 스마트도시협회가 당초 과업대로 구현되지 못한 112 연계서비스 등을 연계하도록 하거나 해당 서비스 구축비용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과업 내용이 미완수된 용역 결과물을 시정조치나 금액조정 없이 인수하는 일이 없도록 준공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③ 스마트도시협회 지도·감독 부적정

스마트도시협회는 2017년까지 13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지구 5개소에 에코통합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플랫폼을 보급(공급가액 계 47억 9,400만 원)하였고, 2018년 이후부터는 통합플랫폼은 민간업체가, 5대 연계서비스는 스마트도시협회가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는 95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지구 4개소에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총라이선스비 50억 6,400만 원)하였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에 스마트도시협회의 통합플랫폼 공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스마트 도시협회는 ㉠ 고도화된 통합플랫폼을 개발한 이후에도 모듈 간의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용이 어려운 초기 버전(1.0) 통합플랫폼을 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한강지구)에 판매하거나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통합플랫폼의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임의로 높게 산정하고, ㉢ 5대 연계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비를 이중 수취하거나, ㉣ 연계대상이 없거나 일부기능은 구축하지 않고도 라이선스비용을 모두 수취 ㉤ 112 긴급출동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미구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스마트도시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한강지구의 통합플랫폼을 재시공하도록 하거나 부당수취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스마트 도시협회에 대하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3) 운영 및 사후관리 분야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지연 등 관리 부적정

감사원 감사기간에 LH가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인계를 완료²⁵⁾한 46개 지구의 정보통신시설과 10개 지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인수인계 소요일, 인수인계 비용 등을 점검한 결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평균 인수인계 소요일은 413일이며, 평균 56개의 보완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조치하는 데 계 240억여 원(지구당 평균 8억 2,800만 원)이 소요되고, 인수인계의 지연에 따라 계 25억여 원의 추가 관리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내포신도시와 인천영종지구의 경우 2014년 8월 및 2018년 4월 시설을 준공하고도 2021년 2월 말 현재까지 2,373일과 1,035일이 지나도록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평균 인수인계 소요일은 922일이며, 평균 51개의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조치하는데 계 12억 원이 소요되고, 인수인계가 지연됨에 따라 계 149억여 원의 추가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인천영종지구와 아산배방지구의 경우 2014년 12월과 2013년 6월에 시설을 준공하고도 2021년 2월 말까지 2,251일과 2,805일이 지나도록 각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46개 지구 중 정보통신시설 인수인계가 300일 이상 소요된 10개 지구에 대해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등의 발생 유형과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25) 지방자치단체에 미인수인계된 시설의 경우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지연일수 등을 산정

인수인계 지연 등 발생 유형 및 원인

발생 유형	발생 원인	사전협의·계획수립 미흡	여건 변동	외부기관 협조미흡	부실 구축	계
인수인계 지연	① 당초 설계 또는 협의 과정에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 추가 요구(불합리한 사유)	6	4	-	-	10
	② 구축된 시설의 성능 불량, 사용 불편을 이유로 교체 또는 기능개선 요구	-	-	-	3	3
	③ 설계시점 대비 장비 성능향상에 따른 업그레이드 요구	-	2	-	-	2
	④ 경찰 등 외부기관의 요청 등을 이유로 보완 요구	1	-	-	-	1
	⑤ 기타 설계 당시 대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완 요구(타당한 사유)	7	3	-	-	10
미인수인계	⑥ 단계별 진행사업의 최종 단계 미준공,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 거부	2	-	-	-	2
	⑦ 구축된 시설의 성능 불량 등을 이유로 인수 거부	-	-	-	1	1
		16	9	-	4	29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기준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